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 (무배당)

보험약관 [2026년 6월 1일 개정약관]

삼성생명

감사의 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든든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삼성생명 3만여 컨설턴트와 임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회사에 걸맞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는
삼성생명이 함께 하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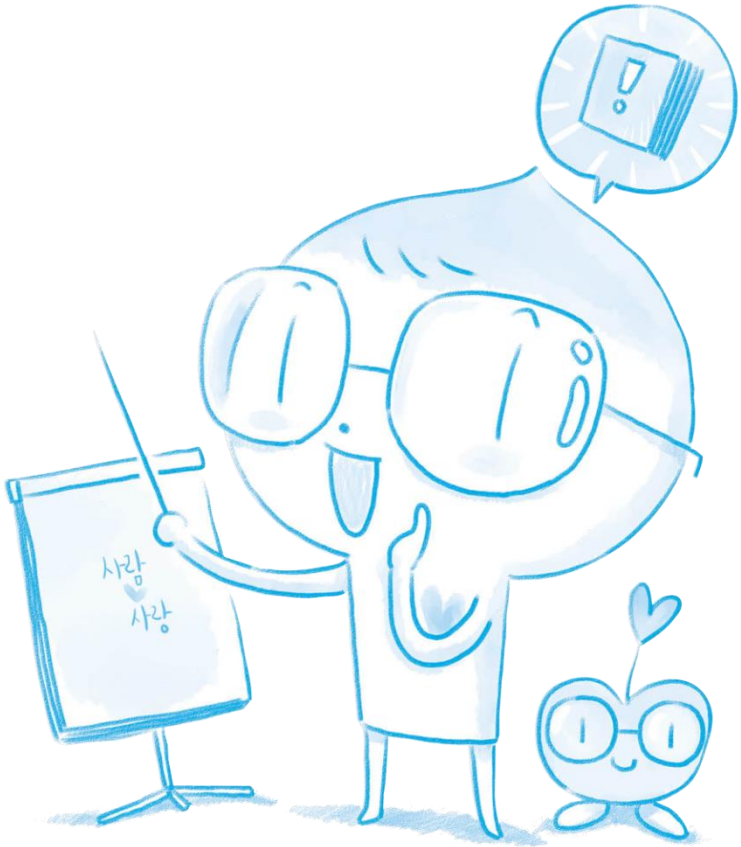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관



조항별 목차

제1조 약관의 목적 3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3조 보험기간 3
제4조 가입자의 범위 3
제5조 수익자 3
제6조 부담금의 납입 3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3
제8조 적립금의 운용 3
제9조 계약의 성립 4
제10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
제12조 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4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4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4
제15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4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4
제17조 중도해지 5
제18조 계약이전 5
제19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5
제20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5
제21조 금리연동형II 적용이율의 적용 6
제22조 금리연동형II 상품의 해지환급금 7
제23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7
제24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7
제25조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7
제26조 이율보증형II의 단위보험 8
제27조 이율보증형II 적용이율의 적용 8
제28조 이율보증형II 상품의 해지환급금 8
제29조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단위보험 8
제29조의2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9
제29조의3 보너스 이율변동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9
제29조의4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유지보너스" 및 "보너스 이율"에 관한 사항 9
제30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10
제31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10
제32조 펀드의 선택 및 변경 12
제33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 및 운용 12
제34조 실적배당형 해지환급에 대한 계산 12
제35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12
제3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12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14
제38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14
제39조 선관주의의무 14
제40조 면책 14
제41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14
제42조 인감신고 14
제43조 신고사항 14
제44조 계약의 승계 15
제45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15
제46조 분쟁의 조정 15
제47조 약관의 변경 등 15
제4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15
제49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15
제50조 소멸시효 15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5

부칙

제1조 시행일 15
제2조 경과조치 15
제3조 수수료 할인 자동적용 16

(별지)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부속협정서

제1조 수수료의 종류 17
제2조 수수료의 징수 17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약관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약관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 약관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약관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장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계약에서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 이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약관에서 "시행령"이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가입자의 범위)

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할 때 가입자로 되는 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이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③ 추가 가입한 가입자의 가입일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④ 가입자는 퇴직 등 연금규약에 정해진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규약에서 추가가입에 대한 사유와 가입일을 명시하는 경우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수익자)

이 계약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조 (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압류·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운용지시·확인(이 약관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Ⅱ,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보너스 이율변동형 포함),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

⑤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펀드유형별로 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 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사용

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사용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0조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사용자가 청약할 때에 사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사용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사용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사용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개시 및 종료)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4조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가입자에 대하여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가입자가 제4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부속협정서(이 약관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5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합니다)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청구가 지연되어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양도·압류·담보제공)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법 제7조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 하는 경우
3.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제4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적립금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펀드의 선택 및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7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자산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자산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0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0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④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2 +지표금리×1)/3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21조~제22조는 금리연동형Ⅱ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Ⅱ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1조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의 적용)

①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납입시점의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동안 확정 적용
2.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을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간 확정 적용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금리연동형Ⅱ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④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서 부담금 납입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적용이율은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1차년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지표금리(%) = A1×0.7 + A2×0.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서 부담금 납입일 이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매1년간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적용이율은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금리연동형Ⅱ 납입 2차년이후 기준이율]
금리연동형Ⅱ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 아래와 같이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 지표금리) ÷ 2
※ 지표금리(%) = A1×0.7 + A2×0.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금리연동형Ⅱ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적립금은 적용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제22조 (금리연동형Ⅱ 상품의 해지환급금)

금리연동형Ⅱ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3년 미만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부담금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중도해지이율 적용기간 종료일(3년 시점) – 3영업일」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부담금 납입일부터 경과기간	금리연동형Ⅱ 중도해지이율
1년 미만	최저보증이율(연 1.0%)
2년 미만	「적용이율 - 연 1.5%」와 「최저보증이율(연 1.0%)」 중 높은 이율
3년 미만	「적용이율 - 연 1.0%」와 「최저보증이율(연 1.0%)」 중 높은 이율

제23조~제25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3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1년, 2년, 2년 6개월(30개월), 3년, 5년 또는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제2항의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이율보증기간은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2년미만 사이에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합니다.

④ 사용자는 본 조 제2항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단,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인 경우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4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④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1년,2년,2년 6개월(30개월),3년 이율보증형 및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의 경우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1년만기/2년만기/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 5년 이율보증형의 경우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율보증형, 일단위 만기지정식(11개월 이상 2년미만)
- 지표금리(%) = 0.7×A1 + 0.3×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A1 + 0.3×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6개월(30개월)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6×A1 + 0.2×A2 + 0.2×A3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A3: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6×A1 + 0.4×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6×A1 + 0.4×A2
  A1: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25조 (이율보증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의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
90일 미만	연 0.1%
180일 미만	연 0.5%
1년 미만	연 1.0%
2년 미만	「적용이율의 50%」와 「연1.0%」 중 높은 이율

3년 미만	「적용이율의 50%」와 「연1.0%」 중 높은 이율
4년 미만	「적용이율의 60%」와 「연1.0%」 중 높은 이율
5년 미만	「적용이율의 70%」와 「연1.0%」 중 높은 이율

제26조~제28조는 이율보증형Ⅱ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Ⅱ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이율보증형Ⅱ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사용자는 본 조 제2항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Ⅱ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단위보험 만기일에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만기가 도래한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의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합니다.

제27조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동일한 이율보증기간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보다 높게 결정합니다.

④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최저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⑤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며, 동일한 이율보증기간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보다 높게 결정합니다.

[이율보증형Ⅱ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율보증형Ⅱ
- 지표금리(%) = 0.6×A1 + 0.4×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제28조 (이율보증형Ⅱ 상품의 해지환급금)

이율보증형Ⅱ 단위보험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의 이율보증형Ⅱ 중도해지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	이율보증형Ⅱ 중도해지이율
90일 미만	연 0.1%
180일 미만	연 0.5%
1년 미만	「적용이율의 20%」와 「연0.5%」 중 높은 이율
2년 미만	「적용이율의 20%」와 「연0.5%」 중 높은 이율
3년 미만	「적용이율의 20%」와 「연0.5%」 중 높은 이율

제29조~제29조의4는 보너스 이율변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보너스 이율변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설명	보너스 이율변동형은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은 매 1년마다 변경 적용하되 중도해지이율은 3년간 적용하는 년변동 3년만기 상품입니다. 단위보험별로 중도해지나 상품변경 없이 납입원금을 만기시점까지 유지하는 경우 단위보험 만기일에 "보너스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유지보너스"를 단위보험 적립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단위보험)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합니다. 이 때, 각 단위보험의 만기일은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며,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

용이율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② 사용자는 보너스 이율변동형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너스 이율변동형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을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29조의2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로 하여,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 단위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은 회사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단, 회사가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단위보험(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만기일에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설정된 경우 포함)은 단위보험 설정일에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관에서 정한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내 "보험상품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합니다.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보너스 이율변동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이율변동형
- 지표금리(%) = 0.65×A1 + 0.35×A2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제29조의3 (보너스 이율변동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보너스 이율변동형은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의 보너스 이율변동형 중도해지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및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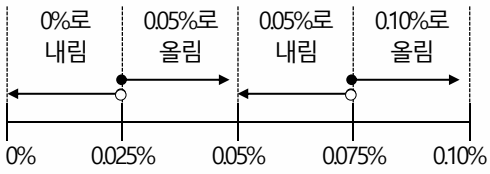
각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경과기간	보너스 이율변동형 중도해지이율
90일 미만	연 0.1%
180일 미만	연 0.5%
1년 미만	연 1.0%
2년 미만	「적용이율의 50%」와 「연1.0%」 중 높은 이율
3년 미만	「적용이율의 50%」와 「연1.0%」 중 높은 이율

제29조의4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유지보너스" 및 "보너스 이율"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단위보험별로 제17조(중도해지)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또는 상품변경 없이 만기일까지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너스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유지보너스"를 단위보험 만기일에 보너스 이율변동형 단위보험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보너스 이율변동형 단위보험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및「만기일 – 3영업일」이내에 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유지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합니다.
③ "보너스 이율"은 연 0.1%로 하며, 이를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만기일까지 3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너스 이율"은「보너스 이율변동형 단위보험 설정일의 적용이율」의 10%를 0.0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 값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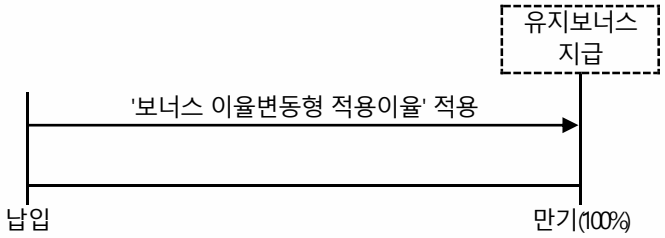
설명

<0.05% 포인트 단위 반올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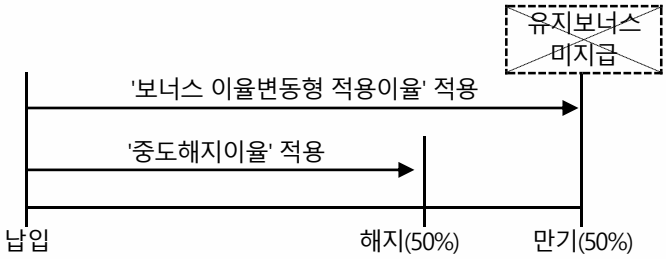


[보너스 이율변동형 적립금 계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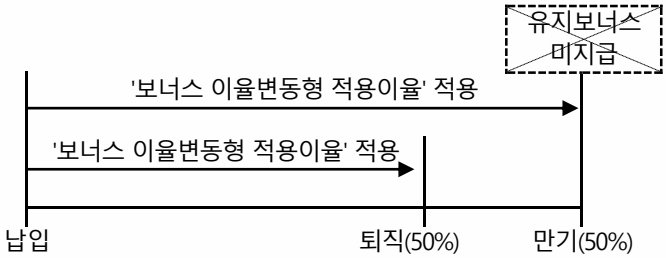
[예시1]
중도해지 또는 상품변경 없이 납입원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예시2]
만기 이전에 납입원금의 50%는 중도해지(또는 상품변경)하고 나머지 50%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예시3]
만기 이전에 납입원금의 50%는 가입자 퇴직의 사유로 인출하고 나머지 50%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제30조~제37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밸류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순자산(NAV)의 90% 이내, 저평가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2.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순자산(NAV)의 90%이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3.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순자산(NAV)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4.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90%이내, 미국, 유럽, 일본, 이머징마켓 및 한국 등 글로벌주식〔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 주식예탁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및 글로벌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5.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90%이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4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투자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6. 일반주식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펀드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며, 국내 투자적격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합니다〕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40% 이내,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7. 단기채권형(클래스H)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특히, 채권은 편입일 현재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국채 2년 이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2년 이하) 등에 투자합니다.
8. 채권형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 채권[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100%를 투자합니다.
9. 인덱스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에 투자함

에 있어 한국종합주가지수200(KOSPI 200지수)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합니다.

10. 삼성그룹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 부분은 삼성그룹 계열 종목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11. S selection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적격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투자적격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 내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하며 투자적격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12. S selection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적격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식과 투자적격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단, 주식관련자산(집합투자기구 내에 편입된 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비중은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하며 투자적격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13. S자산배분형70 (주식편입비율 70% 이하) : 국내,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 및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 및 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0~70%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대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의 60% 미만을 주식, 채권 및 관련자산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편입비율 산정시 해당 수익증권의 약관상 최대 편입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년도(2040년)를 타겟으로 하여,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운용초기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목표년도인 2040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내, 펀드의 총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로 하며 투자적격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비중은 주식의 경우 펀드 내 주식투자액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펀드 내 채권투자액의 80% 이내로 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5.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년도(2050년)를 타겟으로 하여,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운용초기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목표년도인 2050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내, 펀드의 총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로 하며 투자적격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비중은 주식의 경우 펀드 내 주식투자액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펀드 내 채권투자액의 80% 이내로 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6.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목표년도(2060년)를 타겟으로 하여,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리츠 포함), 국내외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 등으로 합니다.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운용초기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며, 목표년도인 2060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은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내, 펀드의 총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로 하며 투자적격은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비중은 주식의 경우 펀드 내 주식투자액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펀드 내 채권투자액의 80% 이내로 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7.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분산 투자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상장주식좌수 증감을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의 주도 ETF를 선별하여 3개월 단위로 재구성하는 지수를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며, 해당 목표 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합니다.

제32조 (펀드의 선택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31조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단,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S자산배분형7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및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펀드의 경우는 "변경요구일+8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적립금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변경합니다. 단,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S자산배분형7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및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펀드의 경우는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8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평가 및 운용)

① 실적배당형 펀드는 제31조에서 정한 펀드유형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시가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② 특별계정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운용할 경우 투자자그룹(이 약관에서 "클래스"라 합니다)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체계 등을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출합니다. 단, 각 클래스별 자산은 펀드형태별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③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④ 실적배당형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운용합니다.

⑤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제36조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⑥ 사용자는 제32조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실적배당형 해지환급금에 대한 계산)

① 실적배당형의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4영업일의 기준가(재간접형 펀드의 경우는 5영업일)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S자산배분형7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및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펀드의 경우는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8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산출하고, 기준가 적용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제3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① 회사는 실적배당형 펀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립금에서 매일 차감합니다. 다만, 펀드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 운영보수

구분	비용
일반주식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15753425% (연 0.575%)
인덱스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18493151% (연 0.675%)
삼성그룹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13972603% (연 0.510%)

S selection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11506849% (연 0.420%)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4246575% (연 0.520%)
밸류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4246575% (연 0.520%)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4246575% (연 0.520%)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2876712% (연 0.470%)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2876712% (연 0.470%)
S selection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9315068% (연 0.340%)
채권형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8767123% (연 0.320%)
단기채권형(클래스H)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4383562% (연 0.160%)
S자산배분형70 (주식편입비율 7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13068493% (연 0.477%)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7123288% (연 0.26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7123288% (연 0.26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7123288% (연 0.260%)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8767123% (연 0.320%)

2. 투자일임보수

구분	비용
일반주식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8356164% (연 0.305%)
인덱스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5068493% (연 0.185%)
삼성그룹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0273973% (연 0.010%)
S selection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1643836% (연 0.060%)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1671233% (연 0.061%)
밸류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4383562% (연 0.160%)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4328767% (연 0.158%)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2630137% (연 0.096%)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3917808% (연 0.143%)
S selection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1095890% (연 0.040%)
채권형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1643836% (연 0.060%)
단기채권형(클래스H)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0547945% (연 0.020%)
S자산배분형70 (주식편입비율 7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4109589% (연 0.15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2465753% (연 0.09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2465753% (연 0.09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2465753% (연 0.090%)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1369863% (연 0.050%)

3. 수탁보수

구분	비용
일반주식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0273973% (연 0.010%)
인덱스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삼성그룹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S selection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0547945% (연 0.020%)
밸류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0273973% (연 0.010%)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S selection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채권형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단기채권형(클래스H)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S자산배분형70 (주식편입비율 70% 이하)	매일 적립금의 0.0000547945% (연 0.020%)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4. 사무관리보수

구분	비용
일반주식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매일 적립금의 0.0000273973% (연 0.010%)
인덱스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삼성그룹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S selection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글로벌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밸류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그로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인덱스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자산배분혼합형(클래스H)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S selection혼합형 (주식편입비율 40% 이하)	
채권형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단기채권형(클래스H) (채권편입비율 60% 이상)	
S자산배분형70 (주식편입비율 70% 이하)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4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5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실속있는 적격TDF 2060 (현금성자산 및 채권편입비율 20% 이상)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주식형) (주식편입비율 60% 이상)	

5.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2조에 따른 펀드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펀드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38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9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1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인감신고)

사용자는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4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46조 (분쟁의 조정)

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비영업일 포함)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비영업일 포함)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4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50조 (소멸시효)

가입자의 급여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또는 부담금 반환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시행일부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③ 단, 2015년 5월 28일 이전에 금리연동형 상품 또는 금리연동형Ⅱ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유지할 때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하며, 2015년 5월 29일 이후에 금리연동형 상품 또는 금리연동형Ⅱ 상품에 가입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약관

제3조 (수수료 할인 자동적용)

① 회사는 2024년 1월 31일 기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해 별지 제2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② 이 계약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접수 없이 해당 수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별지)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부속협정서

(별지)

삼성생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험(무배당) 부속협정서

_____(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약관(이 협정서에서 "약관"이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협정서에 의하여 약관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해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산출합니다. 단, 사용자는 회사와 상호협의에 따라 연1회에 한하여 계산기준일 및 수수료 납입주기(분기납, 반기납, 연납)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다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이하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이라 합니다)의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 자산관리수수료율(연 0.3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산기준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당월에 계산기준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산기준일로 하며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별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이 연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연미만 경과일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미만 경과일수로 환산한 수수료율

   $$= \text{연 수수료율} \times \frac{\text{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경과일수}}{\text{당해 보험연도의 일수(365 또는 366)}}$$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약관 제18조에 의한 전부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또한, 적립금을 이전하면서 「적립금 이전 직후의 잔여적립금」이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적립금이전일 전일까지를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여 산출한 자산관리수수료」(이하 "이전 시점 자산관리수수료"라 합니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립금이전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때 징수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이전 시점 자산관리수수료」에 적립금이전비율(적립금 이전 금액(수수료 차감전) ÷ 적립금 이전 직전의 총 적립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금이전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산기준일에는 이미 징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 5차년도부터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이때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 계약(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합니다. 다만, 2016년 9월 1일 이후 기업 분사 등으로 인해 계약이 분할되어 분할과 동시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은 분할 전 계약의 사용자가 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 계약의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 합니다.
5.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7년 7월 26일 이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을 이전하여 회사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과 제4호에서 정한 기산일 중 더 빠른 날을 계약경과년수의 기산일로 합니다.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를 할인 적용하여,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 대비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10%를 할인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7호는 적용하지 않고 제6호만 적용합니다.
9. 이율보증기간이 3년 이상인 이율보증형 및 이율보증형Ⅱ(이하 "중장기 이율보증형"이라 합니다)의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의 15%를 할인 적용합니다. 이때 중장기 이율보증형 적립금 자산평가액은 2019년 11월 27일 이후 적립금 자산평가액부터 합산 적용하며, 3년 이율보증형, 5년 이율보증형 및 3년 이율보증형Ⅱ 적립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최종 자산관리수수료(할인 반영) 계산방식]

최종 자산관리수수료(할인 반영)는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A)에서 제4호에서 제5호에 따른 장기유지할인 수수료(B), 제6호에서 제8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소기업 할인 수수료(C) 및 제9호에 따른 중장기 이율보증형 할인 수수료(D)를 각각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A) 자산관리수수료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보장형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은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II,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II 및 보너스 이율변동형의 적립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원리금보장형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
×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율)
+ (실적배당형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
× 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율)

•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

$$= \frac{\text{일별 적립금 자산평가액의 합계}}{\text{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경과일수}}$$

(B) 장기유지할인 수수료 = (A) × 장기유지할인율(5%)

(C) 사회적기업/중소기업 할인 수수료
- 사회적기업인 경우(중소기업에도 중복해당인 경우 포함):
(C) = (A) × 사회적기업할인율(50%)
- '사회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C) = (A) × 중소기업할인율(10%)

(D) 중장기 이율보증형 할인 수수료
= 중장기 이율보증형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
× (A) 계산 시 적용한 자산관리수수료율
× 중장기 이율보증형 할인율(15%)

• 중장기 이율보증형 일평균 적립금 자산평가액

$$= \frac{\text{일별 중장기 이율보증형 적립금 자산평가액의 합계 (2019년 11월 27일 이후)}}{\text{(A) 계산 시 적용한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경과일수}}$$

10.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합니다. 이때, 적립금 자산에 따라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매각하는 자산이 복수일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적용이율이 낮은 상품부터 매각
    나. 적용이율이 가장 낮은 상품이 복수일 경우 명세일자가 오래된 상품부터 매각
11. 제10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2. 제1호에서 제10호에 따른 적립금 자산평가액은 시장가격(금리연동형II, 이율보증형, 이율보증형II 또는 보너스 이율변동형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적용이율로 계산한 적립금,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단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이 계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서명 날인(도장을 찍음)한 후 각 1부를 보관합니다.